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12. 19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
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개정에 따라,

서울시 교육청, 자치구, 박물관 및 미술관,

기타 법인·단체 등의 협력을 위해

시장의 예산수립 및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

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제출요구 시

자료 제출의 보고를 명시하는 조항과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

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
기타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

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3조 제목의 경우
‘박물관·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’에서
주체를 강조하고자 ‘시장의 책무’로 규정하고,
시장의 예산수립 및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3조의2의 경우,
최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, 기존 ‘계획’에서
‘시행계획’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5조의 2 신설을 통해
경비를 지원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,
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,
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7조의 경우,
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
별도 조항을 신설하고자 기존 규정 내용을 삭제하였으며,
안 제7조의2의 경우,
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안 제8조의 경우,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
세부적 회의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으며,
안 제3조의2, 안 제6조의 경우,
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